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3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를 무세화(윤후덕의원안)	2

I. 개요

1.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3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후덕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2. 10.
- (3) 회 부 일 : 2025. 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페로실리코크로뮴·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 무세화(윤후덕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 (「관세법」 별표)				□ 페로실리코크로뮴·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기본세율 무세화(「관세법」 별표)			
호	소호	품명	세율	호	소호	품명	세율
2704	00	코크스 (석탄제 조분)	3	2704	00	코크스 (석탄제 조분)	무세
3801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 와 노(爐) 내장용 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8	3801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 와 노(爐) 내장용 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무세
7202	21	페로실리콘(실리 콘 함유량 55% 초과분)	2	7202	21	페로실리콘(실리 콘 함유량 55% 초과분)	무세
7202	29	페로실리콘 기타		7202	29	페로실리콘 기타	
		1.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 량의 100분의 2 이상	3			1.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 량의 100분의 2 이상	무세
		2. 기타	3			2. 기타	무세
7202	41	페로크로뮴(탄소 4% 초과분)	2	7202	41	페로크로뮴(탄소 4% 초과분)	무세
7202	49	페로크로뮴(기타)	2	7202	49	페로크로뮴(기타)	무세
7202	50	페로실리코크로 뮴 (ferro-silico-chro mium)	2	7202	50	페로실리코크로 뮴 (ferro-silico-chro mium)	무세
7202	60	페로니켈 (ferro-nickel)	3	7202	60	페로니켈 (ferro-nickel)	무세
7202	91	페로티타늄 (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 늄	3	7202	91	페로티타늄 (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 늄	무세

현 행				개 정 안			
		(ferro-silico-titanium)				(ferro-silico-titanium)	
7202	93	페로니오븀 (ferro-niobium)	<u>3</u>	7202	93	페로니오븀 (ferro-niobium)	<u>무세</u>
7202	99	합금철 기타		7202	99	합금철 기타	
		1.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 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u>3</u>			1.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 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u>무세</u>
		2. 기타	<u>3</u>			2. 기타	<u>무세</u>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2. 기타	<u>3</u>			2. 기타	<u>무세</u>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u>2</u>			1. 괴(塊)	<u>무세</u>
		2. 가루	<u>3</u>			2. 가루	<u>무세</u>
8545	11	노용 탄소전극	<u>5</u>	8545	11	노용 탄소전극	<u>무세</u>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윤후덕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37)

□ 개정안은 철강 완제품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페로실리크로뮴,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¹⁾(HS 6단위 14개, 세목수 17개)의 기본세율(2~8%)을 무세화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석탄제조분 코크스(2704.00), 전극용 탄소질 및 노(爐) 내장용 페이스트(3801.30), 실리콘 함유량 55% 초과 페로실리콘(7202.21), 페로실리콘 기타(7202.29), 탄소 4% 초과 페로

1) 철광석·무연탄 등 주원료 외에 철강의 기능 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코크스, 페로실리콘, 페로크로뮴 등의 부수적 원료를 말함

크로뮴(7202.41), 기타 페로크로뮴(7202.49), 페로실리코크로뮴(7202.50), 페로니켈(7202.60), 페로티타늄·페로실리코티타늄(7202.91), 페로니오븀(7202.93), 합금철 기타(7202.99) 합금하지 않은 니켈 기타(7502.10), 티타늄의 괴, 가루(8108.20), 노(爐)용 탄소전극(8545.11)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0%로 무세화(無稅化) 하려는 것임.

□ 현재 철강의 완제품에 대하여는 관세율 0%(WTO 양허세율)가 적용되고 있으나, 철강의 부원료²⁾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율 2~6.5%(기본세율³⁾ 또는 WTO 양허세율⁴⁾이 적용⁵⁾됨.

2) 철강의 부원료란 합금철 등을 생산할 때 필요한 필수원료인 페로실리코크로뮴·페로티타늄 등을 말함.

3)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特惠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2025년 현재 6개의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 할당관세 지원실적은 부원료 당 2.3억원~94.0억원 수준임.

[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 WTO 일반양허세율, 할당세율 비교]

HS (6단위)	품명	관세법상 기본세율	WTO협정 일반양허세율	할당세율	
				2025년 현재 세율	2023년 실적 (억원)
2704.00	코크스 (석탄제조분)	3%	5%	-	3.4
3801.30	전극용 탄소질 및 노 (爐) 내장용 페이스트 (페이스트)	8%	6.5%	-	2.3
7202.21	페로실리콘(실리콘 함 유량 55% 초과분)	2%	10%	0% (수입전량)	41.6
7202.29	페로실리콘(기타)	3%	10%	-	-
7202.41	페로크로뮴(탄소 4% 초과분)	2%	5%	0% (수입전량)	94.0
7202.49	페로크로뮴(기타)	2%	5%	0% (수입전량)	16.5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	2%	5%	-	-
7202.60	페로니켈	3%	5%	0% (수입전량)	33.1
7202.91	페로티타늄, 페로실리 코티타늄	3%	5%	-	2.9
7202.93	페로니오븀	3%	5%	0% (수입전량)	83.0
7202.99	합금철 기타	3%	5%	-	-
7502.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기타(니켈괴)	3%	5%	-	8.2
8108.20	티타늄의 괴, 가루	괴: 2% 가루: 3%	5%	괴: 0% (수입전량) 가루: -	14.4
8545.11	노용 탄소전극	5%	10%	-	2.5

5) 전극용 탄소질 및 노(爐) 내장용 페이스트(3801.30)에 대한 관세율표 상 기본세율은 8%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WTO 양허세율 6.5%가 적용됨.

주: 음영부분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함.(할당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며, WTO 일반양허세율은 기본관세율·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개정안은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첫째, 현재의 철강 가공단계별 역경사 관세 구조(관세율: 부원료 > 중간재⁶⁾, 완제품⁷⁾) 하에서는 수입 원자재를 가공하는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음.

철강 완제품 관세보다 철강 부원료 관세가 더 높은 현재의 역경사 구조에서는 부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하는 것보다 철강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둘째, 현재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할당관세는 정부가 매년 재량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무세화하는 것에 비하여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할당관세, 완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FTA 체결

6) 예) 슬라브(7207)의 경우 기본세율·WTO협정세율 0%

7) 예) 후판(7208)의 경우 WTO 협정세율 0% 적용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세율 인하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2025년 현재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HSK⁸⁾기준) 중 6개⁹⁾의 부원료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해 세율을 낮춰 역경사 관세구조를 완화¹⁰⁾하고 있고, 14개¹¹⁾의 부원료와 관련해서는 완제품인 스테인리스가 수입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5개¹²⁾의 부원료에 대해서는 세율이 0%인 FTA 체결국 수입비중이 높음.

둘째, 기본관세의 무세(0%)화는 향후 FTA 등 체결 시 협상력, 주요 경쟁국 관세율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¹³⁾.

향후 러시아·남미 등과의 FTA 협상력 제고¹⁴⁾를 위한 협상 레버리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철강 부원료의 관세율(평균 3.04%)은 일본·EU 등 경쟁국가와 유사한 수준(평균 3.09%)이라는 의견임.

8) Harmonized System of Korea;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9) 페로실리콘, 페로니오븀, 티타늄, 페로크로뮴(2종류), 페로니켈

10)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할당관세에 따른 지원액은 약 203.3억원으로 추정됨

11) ‘페로티타늄, 페로실리코티타늄’, ‘티타늄의 괴’, ‘티타늄의 가루’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부원료

12) FTA체결국 수입비중 : 코크스(92%), 페이스트(95%), 페로실로코크로뮴(100%), 페로티타늄(56%), 탄소전극(93%)

13) 기획재정부 의견

14)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진행 중

[각 국 철강 부원료 관세율 현황]

HS (6단위)	품목명	한국	중국	미국	일본	EU	평균
270400	코크스 (석탄제조분)	3	5	0	3.2	0	2.24
380130	전극용 탄소질 및 노(爐) 내장용 페이스트	6.5	6.5	4.9	2.6	5.3	5.16
720221	페로실리콘	2	2	1.1~ 5.8	0	5.7	2.16
720229	페로실리콘 (기타)	3	2	0	3	5.7	2.74
720241	페로크롬 (탄소 4% 초과분)	2	2	1.9	0	4	1.98
720249	페로크롬 (기타)	2	2	3.1	5.3	7	3.88
720250	페로실리코크 롬	2	2	10	2.5	2.7	3.84
720260	페로니켈	3	2	0	3.3	0	1.66
720291	페로티타늄, 페로실리코 티타늄	3	2	3.7	2.5	2.7	2.78
720293	페로니오븀	3	2	5	0	0	2.00
720299	합금철 기타	3	2	4.2~ 5	2.5	0~2. 7	2.34
750210	니켈의 괴	3	3	0	11.7	0	3.54
810820	티타늄과 그 제품	2	3	15	0	5	5.00
8545.11	노용 탄소제품	5	8	0	3.9	2.7	3.92
	평 균	3.04	3.11	3.49	2.89	2.91	3.09

* 2025년 기준

* 각 평균 도출 시 세율 범위가 있는 경우 낮은 값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현재 국내에서 용광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곳¹⁵⁾으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소수 대기업에 관세지원 혜택이 편중될

15) 포스코(광양, 포항), 현대제철(당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관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HS CODE¹⁶⁾ 10자리까지 구분된 품목별 관세 징수실적 자료가 없어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58

16)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됨.